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98

발의연월일: 2025. 1. 13.

발 의 자:이해민·김준형·정춘생

백선희 • 강경숙 • 박은정

김우영 · 황운하 · 정동영

민병덕 · 신장식 · 김선민

서왕진 • 조인철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계엄을 선포했음. 이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됨. 그러나 권한 행사 정지로 실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 2,124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있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통념에 어긋남. 공공 재정의 집행과 공직의 윤리 책임성에 대한 국민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고위직 공무원은 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음. 이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탄핵소추 의결 또 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① 헌법 또는 법령 위반이나 직무상의 중대한 과실로 탄핵소추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

- ②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등 권한 행사 정지의 사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 직무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보수는 해당 공무원에게 일괄 지급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제2조제3항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47조의2(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
	무원의 보수) ① 헌법 또는 법
	령 위반이나 직무상의 중대한
	과실로 탄핵소추 의결 또는 이
	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직무 정지 기
	간 중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
	②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안 기각 등 권한 행사 정지의
	사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 직무 정지 기간 동
	안 지급되지 않은 보수는 해당
	공무원에게 일괄 지급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제2조제3
	항에 한하여 적용한다.